

## 07

## 보훈·국방(방사)·병무

## 독립유공자 손자녀 보훈급여금 지급대상 확대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 044-202-5411

- 1945. 8.15.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 등록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손자녀 1명에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 지금까지는 독립유공자가 1945. 8.15.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손자녀가 보상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최초 등록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또한, 손자녀는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동 개선내용은 2015. 1. 1.부터 새롭게 보상금을 받게 되는 손자녀부터 적용됩니다.

## 2015년도 독립유공자 손자녀 보훈급여금 지급대상 확대 항목

- 추진배경 : 시대·사회 변화를 반영한 수급자 선정 기준 개선 및 형평성 제고
- 주요내용
  - ① 독립유공자가 1945.8.15 이후 사망한 경우에도 최초 등록당시 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 한해 손자녀 1명에게 보상금 지급
  - ② 손자녀의 경우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지급
- 시행일 : 2015년 1월

## ■ 독거·복합질환 참전유공자에 대한 재가복지서비스 강화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 (☎ 044-202-5620)

■ 거동이 불편하고 생활이 어려운 독거 참전유공자 중 3개 이상 노인성질환이 있는 분에게 재가복지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 나라를 위해 공헌한 참전유공자의 급속한 고령화(6·25참전유공자 평균연령 84세)로 편안한 노후를 위한 국가의 관심과 보호가 절실하며,
- 생활이 어려운 참전유공자\* 중 독거로 3개 이상 노인성 질환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보훈섬김이가 주3회 방문(기존 주1~2회)하여 가사·간병서비스를 실시 할 예정입니다

\* 참전유공자와 경합된 모든 보훈대상자 해당

- 이를 위해 보훈복지인력을 243명 증원(보훈복지사 17명, 보훈섬김이 226명)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재가복지서비스 만족도 제고에 기여 할 예정입니다.

☎ (참고) 국가보훈처 홈페이지>보훈지원>이동보훈복지서비스>자료실>참전유공자 재가복지서비스 강화

## 수도권 지역의 보훈요양원 입소 대기자 해소를 위해 남양주 보훈요양원 개원

국가보훈처 복지운영과 (☎ 044-202-5631)

■ 수도권 지역의 보훈요양원 입소 대기자 해소를 위해 **남양주 보훈요양원**을 건립하여 2015년 2월 개원할 예정입니다.

- 전국 보훈요양수요 접근성을 감안하여 현재 5개 요양원(수원, 광주, 김해, 대구, 대전 지역)을 운영하고 있으나, 수도권 지역의 보훈요양원 입소 대기자 해소를 위해 남양주 보훈요양원을 건립하여 요양서비스 점진적 확대를 통해 국가유공자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남양주 보훈요양원은 '15.1. 19부터 입소를 시작하여 '15. 2월 개원 예정에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장기요양 200명, 주간보호 25명을 동시에 모실 수 있게 됩니다.

☞ (참고) 자세한 내용은 [http:// nyjcare.bohun.or.kr](http://nyjcare.bohun.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남양주 보훈요양원

-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819
- 연락처 : 031-579-7000(남양주보훈요양원 개원준비단)
- 규모
  - 대지 5,005㎡(1,516평), 연면적 9,268㎡(2,808평)
  - 건물규모 : 지하1층, 지상4층, 건물높이 19.5m
- 주요시설
  - 57개 요양실, 물리치료실, 심리안정치료실, 작업치료실, 프로그램실 등

##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한 군인 등이 고엽제환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 확대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과 (☎ 044-202-5759)

-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한 군인 등이 고엽제환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을 1972년 1월 31일까지 연장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군인이나 군무원 등이 고엽제환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은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 31일 까지였습니다.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사위 계류중, 공포후 즉시시행)으로 1972년 1월 31일까지로 연장될 예정입니다.
  -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분중 고엽제피해가 있으신 분들은 등록신청하여 신체검사 등을 거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결정되면 보상금지원, 취업·교육보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참고)국가보훈처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보훈법령

## ■ 상이국가유공자 복지카드 기능통합으로 사용자 불편해소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과 ☎ 044-202-5761)

- 상이국가유공자의 복지카드 사용불편 해소를 위하여 LPG할인과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무임교통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복지카드를 발급 시행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LPG복지카드와 고속도로 통행카드를 따로 발급하여 사용하여 왔습니다.
    - 2014.12.23부터 LPG할인과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기능이 하나로 통합된 복지카드를 발급할 계획입니다.

☎ (참고)국가보훈처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보철용차량 지원지침

## 5급 공채공무원의 중위 임관제도 보완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 02-748-5121)

- 2015년 4월부터 국립외교원을 거쳐 5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도 중위로 임관할 수 있습니다.
  - 2014년부터 국방부는 정부부처 실무경험이 있거나 필요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5급 공채 공무원을 중위로 임관하여 개인역량과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활용하고 있습니다.
  - 이에 더해 2014년 외무고시가 폐지된 이후 국립외교원을 수료한 인원을 5등급 외무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외무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군인사법」을 개정하여 중위 임관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 이는 5급 공채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군이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확대될 것입니다.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법령>군인사법>제12조 장교의 초임계급 등

### 5급 공채공무원의 중위 임관제도 보완

- 추진배경  
외무공무원 임용절차가 변경됨에 따라 외교관후보시험에 합격하고 국립외교원을 거쳐 5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도 중위로 임관할 수 있도록 보완
- 주요내용
  - 5급 공채 공무원의 장교 선발 시 필기시험 면제
  - 전문성 활용 차원에서 직렬별로 연관성 있는 병과에 한해 중위 이상 임관
- 시행일 : 2015년 4월 1일(12. 9. 국회 본회의 의결)



## 평시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 선발대상 확대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 02-748-5121)

- 군사적인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선발 계급과 시기를 조정하였습니다.
  - 2013년도 국방부는 창군 이래 처음으로 예비역 대위와 중사를 전역 당시의 계급인 대위와 중사로 선발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총 37명을 재임용하였습니다.
  - 이후 제도운영 성과를 반영하여 2014년 7월부터는 선발 시기와 계급을 조정하였습니다. 기존 연 1회에서 전반기와 후반기로 구분하여 연 2회 선발하고, 선발계급은 대위, 중사 뿐만 아니라 중위 계급도 포함하였습니다.
  - 임용일 기준 3년 이내 전역자로서, 재임용 후 3년 근무가 가능한 인원 중 서류전형, 신체검사, 체력검정 및 심층면접 등으로 우수자를 선발하여 7월 1일과 12월 1일부로 재임용하고 있습니다.
  - 2015년에도 우수한 중기복무자를 충원할 수 있는 재임용 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 현역으로 재임용된 자의 인사관리는 현역과 차별 없이 동등하게 적용합니다. 또한, 3년간 복무를 원칙으로 하지만 우수 복무자에게는 장기복무 및 진급 선발의 기회도 부여하며, 보수, 각종수당, 퇴직금, 연금 등을 현역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평시 예비역 장교·부사관의 현역 재임용 선발대상 확대

■ 추진배경

우수한 중기복무자를 충원하여 안정적인 인력운영을 보장하고,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공석 직위를 보충하며, 군사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우수예비역을 획득하여 활용함

■ 주요내용

- ① 전역 후 3년 이내의 예비역 장교·부사관 재임용 대상을 확대  
※ 기존 대위, 중사 계급 한정 → 대위, 중위, 중사로 1개 계급 포함
- ② 재임용 후 단기 복무 장교·부사관으로 활용
- ③ 전역당시 계급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임용연령 미제한

■ 시행일 : 2015년 1월

## ■ 군인 진급 또는 전역 시 범죄경력조회 법적 근거 마련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 02-748-5121)

- 군인이 진급하거나 전역할 때, 민간법원에서 처벌받은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 범죄경력은 진급 또는 명예전역 심사 시 감점, 비선 사유에 해당되기에, 인사정책의 형평성과 제도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민간법원에서 처벌받은 범죄경력도 군사법원에 의한 범죄경력과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를 위하여 기존에 대상자별로 제출한 ‘정보제공동의서’의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군인의 책임감과 의무감을 강화하고자 「군인사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범죄경력 조회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합니다.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법령)군인사법시행령)제6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진급·전역 시 범죄경력조회 강화

- 추진배경  
군인신분을 은폐하고 민간법원에서 처벌받은 사람의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진급 및 전역 시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
- 주요내용  
진급 및 전역 시 범죄경력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시행일 : 2015년 1월

##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적용기준 완화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 02-748-5105)

■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을 근로연령 변화추세에 맞춰 적용 기준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일반 또는 기능군무원의 직급별 채용시험 응시연령은 아래와 같은 제한이 있었습니다.

일반 군무원			기능 군무원		
직 급	공개경쟁채용	특별채용	직 급	공개경쟁채용	특별채용
1급		56세			
2급		53세			
3급		53세			
4급		45세			
5급	20~40세	45세			
6급		53세	기능 6급	18~40세	45세
7급	20~40세	53세	기능 7급	18~40세	45세
8급		45세	기능 8급	18~40세	45세
9급	18~40세	45세	기능 9급	18~40세	45세

- 그러나, 2015년부터는 일반 국민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채용시험 응시상한 연령을 아래와 같이 완화할 계획입니다.

직 급	일반군무원	직 급	기능군무원
7급 이상	20세 이상	기능 6급 이하	18세 이상
8급 이하	18세 이상		

###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적용기준 완화

■ 추진배경 : 국민의 공직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채용시험 응시상한연령 완화

■ 주요내용

①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완화

직 급	일반군무원	직 급	기능군무원
7급 이상	20세 이상	기능 6급 이하	18세 이상
8급 이하	18세 이상		

■ 시행일 : 2015년 채용시험부터



##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자격기준 개선

국방부 병영정책과 (☎ 02-748-5164)

- 다년간의 군 생활 경험으로 병영생활에 대한 이해가 높고 상담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예비역을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 지금까지는 상담 관련 자격증과 일정기간 이상의 상담경험이 있을 경우에만 상담관 채용이 가능했습니다.
- 그러나, 2015년부터는 상담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상담 경험이 없더라도 10년 이상의 군 복무경험이 있으면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으로 채용될 수 있습니다.

\* 2015년에는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74명을 전반기에 신규 채용 예정

### 2015년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자격기준 개선

- 추진배경 : 군경험이 풍부한 예비역에 대한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활용 확대
- 주요내용
  - ① 채용기준 변경  
(자격증+상담경험 → 자격증+10년 이상의 군 복무경험 또는 상담경험)
- 시행일 : 2015년 1월

## 휴일/전국 단위 예비군 훈련 소집제도 개선

국방부 예비전력과 (☎ 02-748-5245)

- 예비군 훈련을 본인이 원하는 훈련 일정에 신청하여 휴일 및 전국 단위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뀝니다.
  - 지금까지는 예비군 부대에서 훈련이 부과된 이후에만 휴일/전국 단위 훈련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2015년부터는 훈련이 부과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시 훈련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향방작계훈련에 대한 휴일훈련 신청범위가 확대됩니다.
  - 지금까지 향방작계훈련은 2차 보충훈련에 한해서만 휴일훈련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2015년부터는 1차 보충훈련부터 휴일훈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예비군 홈페이지>공지사항>15년 달라지는 예비군제도 안내

### 2015년 예비군 훈련 소집제도 개선

- 추진배경 : 예비군의 자발적인 훈련참여 유도 및 편의 제공을 위한 제도개선
- 주요내용
  - ① 휴일/전국 단위 훈련 신청절차 개선  
(훈련부과 이후 신청→훈련부과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
  - ② 향방작계훈련 휴일훈련 신청범위 확대(2차보충훈련→1차보충훈련)
- 시행일 : 2015년 1월



## 예비군 일반훈련 입소 허용시간 변경

국방부 예비전력과 (☎ 02-748-5245)

- 예비군 훈련 시 **훈련장 입소 허용시간이 09:00로 변경됩니다.**
    - 지금까지는 훈련 소집통지 시간인 09:00 이후 지연입소자에 대해 09:30 까지 입소를 허용하고 보충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 그러나, 정상 입소한 예비군과의 형평성이나 보충훈련의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소집통지 시간인 09:00 이후에는 훈련장 입소가 되지 않습니다.
- ☞ (참고) 예비군 홈페이지>공지사항>15년 달라지는 예비군제도 안내

### <2015년 예비군훈련 입소 허용시간 변경

- 추진배경 : 정상 입소한 예비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입소 허용시간 통일
- 주요내용 : 예비군 훈련장 입소 허용시간 변경(09:30 → 09:00)
- 시행일 : 2015년 1월



## 예비군 일반훈련 시 M16소총 사용

국방부 예비전력과 (☎ 02-748-5245)

- 예비군 일반훈련 시 총기는 M16소총을 사용합니다.
  - 지금까지는 예비군 일반훈련 시 총기는 칼빈소총과 M16소총을 혼용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모두 M16소총으로 교체하여 사용합니다.
  - 예비군 교육훈련에서 개인화기를 M16소총으로 전량 사용함에 따라 예비군의 훈련 여건이 개선되고, 작전 임무수행 능력 또한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 (참고) 예비군 홈페이지>공지사항>15년 달라지는 예비군제도 안내

### 예비군 일반훈련 시 M16소총 사용

- 추진배경 : 일반예비군 전시임무에 맞는 훈련 여건 개선
- 주요내용 : 예비군 일반훈련 시 칼빈소총을 M16소총 전량 교체
- 시행일 : 2015년 1월



## 병 봉급 인상

국방부 복지정책과 (☎ 02-748-6613)

- 병 봉급을 2014년 대비 15% 인상하였습니다.
  - 병영생활의 최소경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병 봉급을 연차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2017년까지 2012년 대비 **병 봉급 2배 인상**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15년에는 병 봉급을 2014년 대비 15% 인상하여 상병 기준으로 월 15만4천8백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 병 봉급 인상은 의무복무 병사들의 복무의욕을 고취시키고, 복지를 향상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 병 봉급 인상

- 추진배경 : 의무복무병사들의 복무의욕 고취 및 복지향상에 기여
- 주요내용 : 병 봉급을 2014년 대비 15% 인상

구 분	병 장	상 병	일 병	이 병
2014년	149,000원	134,600원	121,700원	112,500원
2015년	171,400원	154,800원	140,000원	129,400원

- 시행일 : 2015년 1월

## 의무복무 중 사망한 병사에 대한 보상강화

국방부 복지정책과 (☎ 02-748-6621)

- 의무복무 중 사망한 병사에 대한 국가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그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자살로 사망한 병사에 대한 ‘병사망위로금’은 유가족에게 5백만원씩 지급되었으나, 2015년 1월 1일부터 1천 5백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 ※ '15년 1월 1일 사망일 기준 적용
  - 자살 이외의 사망자에 대해서는 병 상해보험 가입을 통하여 보험금 1억 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 병 사망자 보상 강화 방안

- 추진배경 : 군 의무복무 중 사망한 병사에 대한 국가책임 이행
- 주요내용
  - 병 사망위로금 인상(자살자, 5백만 원 → 1천5백만 원)
  - 병 상해보험금 지급(자살 이외 사망자, 1억 원)
- 시행일
  - 병 사망위로금 인상 : 2015년 1월
  - 병 상해보험금 지급 : 2015년 3월(예정)

## 장병 전투임무수행 및 복무여건 향상을 위한 장병 보급품 보급 확대

국방부 물자관리과 (☎ 02-748-5799)

■ 장병의 생존성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중점을 두어 장병의 전투임무 수행과 복무여건 등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방탄복 등 개인장구류의 경우 노후하거나 부족한 물자 위주로 보급함으로써 야전부대 전투력 발휘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 이를 해소하고자 2015년에는 장병 전투력 발휘에 핵심적인 필수 개인장구류를 하나로 묶어서 부대 단위로 집중 보급하여, 연말까지 전방 GOP사단 전투부대에 100% 신형으로 교체되도록 추진합니다.

※ 핵심 개인장구류 5종 : 방탄복, 방탄헬멧, 개인천막, 전투배낭, 전투조끼

- 또한, 입대 시 1매 보급되던 동운동복 및 베갯잇(피)을 2015년부터는 입대 시 2매 지급하는 것으로 보급기준을 확대하여 장병들의 복무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 개인일용품은 보충보급품 8품목 중 4품목 즉, 세수·세탁비누, 치약, 칫솔에 대해서만 현금지급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보충보급품 8종 전 품목에 대해 현금지급으로 전환하여, 장병들이 개인 선호에 따라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개인일용품 보충보급품 8종 : 세수·세탁비누, 치약, 칫솔, 휴지, 가루비누, 면도날, 구두약

### 장병 피복·장구류 보급 확대

- 추진배경 : 장병 전투임무수행 및 복무여건 향상을 위한 개인장구류, 동운동복, 베갯잇(피) 보급 및 개인일용품 현금지급 품목 확대
- 주요내용
  - ① 핵심 개인장구류 집중 보급(2015년까지 전방 GOP사단 전투부대에 100% 보급)
  - ② 동운동복, 베갯잇(피) 보급기준 확대(초도 1매 → 초도 2매 지급)
  - ③ 개인일용품 현금지급 품목 확대(세수·세탁비누, 치약, 칫솔 → 세수·세탁비누, 치약, 칫솔, 휴지, 가루비누, 면도날, 구두약)
- 시행일
  - ① 핵심 개인장구류 집중 보급 : 2015년 7월 이후 보급 시작(연말까지 보급 완료 예정)
  - ② 동운동복, 베갯잇(피) 보급기준 확대 : 2015년 7월(잠정, 계약 및 조달기간 필요)
  - ③ 개인일용품 현금지급 품목 확대 : 2015년 3월 이후

## 지뢰사고 피해자 등에 대해 위로금 등의 지급신청 접수

국방부 시설기획과 (☎ 02-748-5859)

- 2015년 4월 16일부터 지뢰사고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하 “피해자 등”)은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이하 “위로금 등”)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뢰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었지만 피해배상에 관한 소멸시효가 경과되어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위로금 등을 지급신청 할 수 있는 피해자는 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부터 2012년 4월 15일까지 지뢰사고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입니다.
    - 다만, 군인 등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와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았거나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피해자 등은 2017년 4월 16일까지 위로금 등을 지급 신청하여야 하고, 지뢰사고 피해 여부 등에 대한 사실조사와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결정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 ☞ (참고) 국방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국방부 관계법령(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 추진배경 : 지뢰사고 피해자 등에 대한 위로금 등 지급을 통해 생활안정 도모
- 주요내용
  - ① 위로금(사망자), 의료지원금(상이자, 치료·보호비 및 보장구 구입비)
  - ② 위로금 등 지급절차 : 피해자 등이 위로금 등 지급신청 ▶ 사실조사 및 지급결정 ▶ 결정서 송달 ▶ 위로금 등 지급
- 시행일 : 2015년 4월 16일

## 징계부가금 제도 도입으로 군 부패행위 처벌 강화

국방부 법무과 (☎ 02-748-6818)

- 군납비리, 방위산업비리 등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징계부가금 제도를 시행합니다.
  - 군인이 금품·향응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한 행위를 한 경우, 징계처분 외에 수수한 금액 또는 횡령·유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2014년 12월 12일부로 도입하였습니다.
  - 또한,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받은 군인이 6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징계권자는 해당 군인의 급여를 압류하는 등 체납처분에 따라 조치할 수 있고, 나아가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할 수 있도록 「군인 징계령」과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군무원에 대해서도 2014년 10월에 「군무원인사법」을 개정하여, 2015년 4월 16일부로 징계부가금 제도를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 금품수수과 공금횡령 군인·군무원에게 징계부가금 부과

- 추진배경 : 공직자에 대한 청렴 요구 증가
- 주요내용
  - ① 금품·향응 수수(授受)와 공금을 횡령(橫領)·유용(流用)한 군인에게 해당 징계 외에 금품·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 시행일 : (군인) 2014년 12월 12일, (군무원) 2015년 4월 16일

## 국산 SW 사용 시 인센티브 제공

방위사업청 획득기반과 (☎ 02-2079-6328)

### ■ 국산 상용SW를 적용하는 경우,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 제안서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합니다.

\* 상용 SW : 무기체계에 포함되는 SW 중 구매하는 SW(운영체계, 미들웨어, 응용SW)로서 내장형 SW와 구분됨

- 핵심기술 연구개발 제안서 평가 시 국산 상용SW의 적용 여부와 적용 방안을 평가합니다.
  - 핵심기술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SW 중심사업은 2점**, 그렇지 않은 사업은 1점을 **국산 상용SW 적용 항목에 배정**하였습니다.
- 무기체계 연구개발 제안서 평가 시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국산 상용SW 적용 여부를 평가합니다.
  - 전체 **SW 국산화 항목의 배점을 0.5점 상향 조정**하고 **상용SW 국산화에 대한 평가를 추가**하여, 국산 상용SW 적용을 위한 노력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국산 상용SW를 적용하는 업체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에 따라 **SW의 국산화가 촉진**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업무·정책>행정규칙>무기체계 연구개발 제안서평가 및 협상지침,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 국산 SW 사용 시 인센티브 제공

■ 추진배경 : SW 국산화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무기체계 SW 국산화 향상

#### ■ 주요내용

- ① 핵심기술 연구개발 제안서 평가시 국산 상용SW 적용 평가항목 및 배점 신설
- ② 무기체계 연구개발 제안서 평가시 SW 국산화 평가배점 상향 조정 및

■ 시행일 : 2015년 1월

## 저가낙찰 방지 및 기술중심의 연구개발을 위한 제안서 평가제도 개선

방위사업청 사업운영평가팀 (☎ 02-2079-5032)

■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국내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기체계 연구 개발사업 제안서 평가 및 협상지침」을 개정·시행합니다.

-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의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안서 평가 시 비용평가 분야에서 최고점을 받을 수 있는 제안비율을 80%에서 90%로 상향조정하여, 무리한 비용절감 대신 우수한 기술능력을 보유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제안비율 : 제안가격 ÷ 사업추정가격

-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무기체계 연구 개발사업에서 저가 입찰로 인한 품질저하, 주계약업체의 원가압박이 중소협력업체에 전가되는 현상 등이 개선되어 방위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업무·정책)법령)행정규칙)무기체계 연구개발 제안서 평가 및 협상지침

### 저가낙찰 방지 및 기술중심의 연구개발을 위한 제안서 평가제도 개선

- 추진배경 : 연구개발 여건 현실화를 통한 무기체계 품질 저하 방지 및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
- 주요내용 : 무기체계 연구개발 제안서 평가시 비용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을 수 있는 제안비율 제안가격/사업추정가격)을 80%에서 90%로 상향조정
- 시행일 : 2015년 1월

## ■ 국산화 개발 지원사업 재도전 기회 제공 및 지원대상 확대

방위사업청 방산지원과 (☎ 02-2079-6442)

-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 실패한 기업에게 재도전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지금까지는 국산화 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하였음에도 개발 기간 종료 등의 사유로 실패한 경우에는 개발이 중단되었으나, 앞으로는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여 개발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를 통해, 실패 위험성이 높아 꺼려하던 **고난이도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에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고부가가치 핵심부품 국산화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대상을 양산 및 운영 유지 중인 무기체계의 핵심부품에서 체계개발 단계에 있는 무기체계 **핵심부품까지 확대**하였으며, 소재 및 소프트웨어의 국산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재와 소프트웨어도 국산화 개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업무·정책>법령>행정규칙>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 운영규정

### 국산화 개발 지원사업 재도전 기회 제공 및 지원대상 확대

- **추진배경** : 고난이도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 촉진 및 소재, SW 등의 국산화 활성화
- **주요내용**
  - ① 성실실패 재도전 제도 도입(성실실패 기업에 최대 2년간 재도전 기회 제공)
  - ② 체계개발 단계의 핵심부품 및 소재와 소프트웨어까지 개발 지원대상 확대
- **시행일** : 2014년 12월

## ■ 섬유·피복류 군수품에 국가통합인증마크(KC 마크) 적용

방위사업청 물자규격팀 (☎ 02-2079-4690)

- 안전성이 더욱 강화된 군수품 보급을 위해 시중 공산품에 적용하고 있는 KC 안전기준과 국가통합인증마크(이하 KC 마크) 표시 방법 등 세부 내용을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에 반영하고, '15년부터 KC 마크가 부착된 섬유·피복류 군수품을 보급합니다.

\* KC : Korea Certification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유해물질 안전관리가 필요한 군수품은 방위사업청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이 지정하고, 세부 적용요건은 국방규격 또는 구매요구서에 반영하여 적용합니다.
- 또한, 군수품의 계약상대자는 국방규격 또는 구매요구서에서 정한 유해물질 안전요건 검사를 실시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에 한해 KC마크를 표시하여 납품합니다.
-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군 장병이 입고 활동하는 피부 접촉성 섬유·피복류 군수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발암성 물질 및 아토피 등 피부질환 유발물질로부터 안전한 군수품을 조달하여 군 장병의 복지향상은 물론 군 전투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업무·정책>법령>방위사업법령>방위사업법 시행규칙

### ■ 섬유·피복류 군수품에 KC 마크 적용

- 추진배경 : 인체 유해물질로부터의 군수품 안전성 확보 및 품질향상 도모
- 주요내용
  - ① 방위사업청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이 유해물질 안전관리가 필요한 품목을 지정
  - ② 국방규격 또는 구매요구서에 유해물질 안전 관련 품질보증 적용기준 반영
  - ③ 유해물질 안전 관련 품질 검사를 거쳐 합격된 제품에 국가통합인증마크(KC) 표시
- 시행일 : 2015년 3월(잠정, 2015년 조달분부터 적용)

##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 개선

병무청 현역입영과 ☎ 042-481-2733

-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이 입영선호시기(2~5월)와 기타시기(6~12월)로 구분하여 희망하는 입영일자 2개(1·2지망)를 선택한 후 무작위 전산 추첨하는 방식으로 개선됩니다.
- '14년도에는 선호시기(2~5월) 추첨제, 기타시기(6~12월) 선착순 제도 운영으로 특정 시기의 입영집중현상과 추첨 탈락자의 불만이 가중되어 '15년도에는 전면 추첨제를 도입 하였습니다.
- 모든 의무자에게 선택기회 부여로 병역이행 자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기타시기 선착순 운영 시 동시 과다접속으로 인한 전산시스템 지연 및 다운 빈발 현상을 해소 하였습니다.

☞ (참고) 병무청 홈페이지>뉴스마당>공지사항

###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 개선

- 추진배경 : 특정시기 입영집중 현상 및 추첨탈락자 불만 해소
- 주요내용
  - '15년 입영일자 본인선택 전면 전산 추첨제 도입
    - ※ 다만, 1월은 입영기일이 촉박하여 재학생입영원으로 입영일자 결정
- 시행일 : 2015년 2월 입영자부터



## 306보충대 해체 후, 사단 직접 입영

병무청 현역입영과 (☎ 042-481-2733)

-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14년말 306보충대가 해체되고, '15년부터 사단 신병교육대대로 의무자가 직접입영하는 입영체제로 변경됩니다.
- 기존 경기지역에 입소하는 의무자의 경우 306보충대에 입소한 후 관할 사단으로 분류되었으나, '15년부터는 보충대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단 신병교육대대로 입영함에 따라 부대에 보다 일찍 적응할 수 있게 되었다.

###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 개선

- 추진배경 :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른 부대 개편계획의 일환
- 주요내용
  - '14년말 306보충대 해체 후, '15년부터 사단신병교육대대로 직접 입영
- 시행일 : 2015년 1월 입영자부터

## 현역 모집병 면접 등 전형 참석자 여비 국고지원

병무청 현역모집과 (☎ 042-481-2742)

- 현역 모집병에 지원하여 면접, 체력검사 등의 모집 전형에 참석한 사람에게 교통비 등의 여비를 국고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현역 모집병은 자발적으로 선택한 병역이행으로 보아 여비 등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2015년 1월부터는 전형 참석에 소요되는 교통비, 숙박비 등을 국가에서 지원하여 병역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여비지급은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범위 내에서 2회까지 확대 지급할 계획입니다.

### 현역 모집병 면접 등 전형 참석자 여비 국고지원

- 추진배경 : 면접·체력검사 등 현역병 모집 전형에 참석한 사람에게 교통비 등 소요경비를 지급함으로써 국민 부담 경감 및 병역에 대한 자긍심을 제고시키고자 함
- 주요내용
  - ① 현역병 모집 지원은 자발적 선택이 아닌 병역의무 이행의 한 과정으로, 면접·체력검사 등 전형에 참석한 사람에게 여비를 국고에서 지원
  - ②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2회까지 확대 지급
- 시행일 : 2015년 1월 전형 참석자부터

## 현역병 모집 선발 평가요소 개선

병무청 현역모집과 (☎ 042-481-2753)

- 그동안 현역병 모집 선발 시, 고교 내신 성적 또는 수능성적을 모집 선발 평가요소로 높게 활용하였으나, 앞으로 **학업성적 반영 비율을 축소 또는 폐지할 계획**입니다.
- 우선 2015년 1월부터는 각 군별로 달리 적용하던 성적반영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그 반영 비율을 대폭 축소(35%)할 예정입니다.
- \* 종전 군별 성적반영 비율 : 해군 50%, 해병대 45%, 공군 100%
- 향후 기술 중심의 지원병은 2016년 1월 입영자부터 성적 반영을 완전 제외하여 자격·면허, 전공 위주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 현역병 모집 선발 평가요소 개선

- 추진배경 : 현역병 모집 지원을 증가로 반복 불합격자 다수 발생에 따른 성적 반영 등 현행 선발 평가요소 개선 필요성 제기
- 주요내용
  - ① 모집병 선발 평가요소 중 성적 반영 축소 및 각 군 반영 비율 동일하게 적용
    - \* 현행(해군 50%, 해병대 45%, 공군 100%) → 개선(각 군 35%)
  - ② 향후, 기술 중심의 지원병은 성적반영 완전 폐지, 자격·면허, 전공 위주로 선발
- 시행일 : ① 2015년 1월 입영자부터  
② 2016년 1월 입영자부터



## 육군 분 · 소대전투병 모집제도 신설

병무청 현역모집과 (☎ 042-481-2749)

- 현행 징집병으로 배치하는 1·3군 야전군 소총병을 우수자원으로 선발 배치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 전투력 강화를 위해 「분·소대전투병」모집제도를 신설합니다.
- 18세 이상 28세 이하의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키(신장) 165cm, 몸무게 60kg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 1차로 전산추첨을 통해 모집계획 인원의 1.5배수를 선발하고, 신체등위와 고교 출결상황 등을 반영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 분·소대전투병으로 선발된 사람은 GP와 GOP, 1·3야전군의 해·강안부대에 근무하게 되며, 명예회장 수여 및 보상휴가 확대 등 다양한 복무혜택을 부여받게 됩니다.

### 육군 분 · 소대전투병 모집제도 신설

- 추진배경 : 1·3군 야전군 소총병을 우수자원으로 선발 배치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 군 전투력 강화
- 주요내용
  - 육군 분·소대전투병 모집제도 신설
    - \* 매월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서 접수
- 시행일 : 2015년 1월 입영자부터

## 성실복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연가의 가산

병무청 사회교육복무과 (☎ 042-481-3010)

- 2014년 11월 10일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병가를 사용하지 않고 성실히 복무한 사람은 2일의 범위 내에서 연가를 추가로 가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사회복무요원의 연가 가산의 경우

- 병가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 2일 가산
- 병가를 1회만 사용한 경우 : 1일 가산

- 사회복요원은 복무 중 통산 31일의 연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질병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병가 미사용자와 사용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병가 미사용자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병무청은 복무기간 중 무단결근, 복무이탈 등 복무의무 위반사실 없이 성실히 근무하고, 병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2일의 범위 내에서 연가를 가산 받을 수 있도록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14년 11월 10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 사회복무요원의 연가 가산

- 추진배경 : 사회복무요원이 질병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병가의 사용자와 미사용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병가의 미사용자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 주요내용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간 중 무단결근, 복무이탈 등 복무의무 위반사실이 없이 성실히 근무하며, 병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2일의 범위 내에서 연가를 가산함
- 시행일 : 2014. 11. 10.부터

## 산업기능요원 전직 제한기간 완화

병무청 산업지원과 (☎ 042-481-2773)

-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에 다른 업체로 옮겨 근무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정업체에서 일정 기간을 근무해야 하는데 그 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됩니다.
- 지금까지는 현재 지정업체에서 1년이상 근무해야 다른 지정업체로 옮겨 근무할 수 있었으나, 근로조건 열악 등 근무환경에 어려움이 있어도 전직 제한기간(1년)까지 다른 업체 근무가 불가하여 중도 퇴사하는 등 근로권의 침해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전직 제한기간을 단축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15년부터는 현재 회사에서 6개월만 근무하게 되면 다른 업체로 옮겨 계속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됩니다.

### 산업기능요원 전직 제한기간 완화

- 추진배경 : 근로환경 등 회사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기능요원의 권익 보호
- 주요내용
  - 전직할 수 있는 최소 근무기간 단축 : 1년에서 6개월로 단축
- 시행일 : 2014. 11. 10.부터